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최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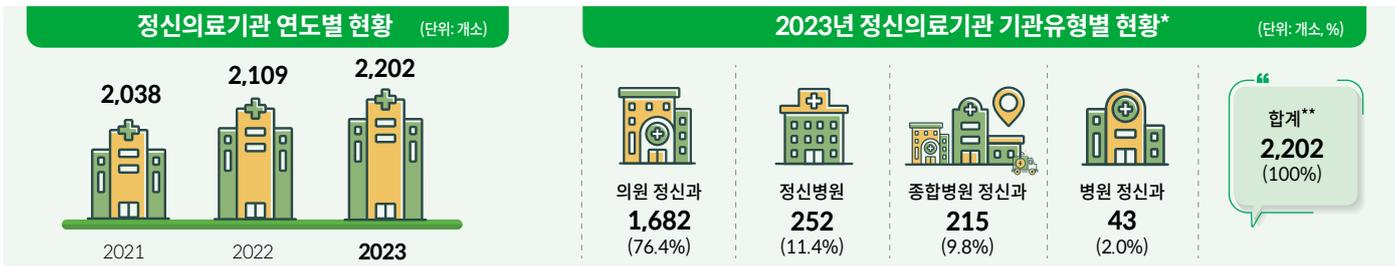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여, 2017년 5월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 기관의 입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소개한다.

주제어 정신의료기관, 비자적 입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정신의료기관 평가

정신의료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2,038개에서 2023년 2,202개로 증가하였다. 정신의료기관 기관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원 정신과가 1,682개(76.4%)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이 252개(11.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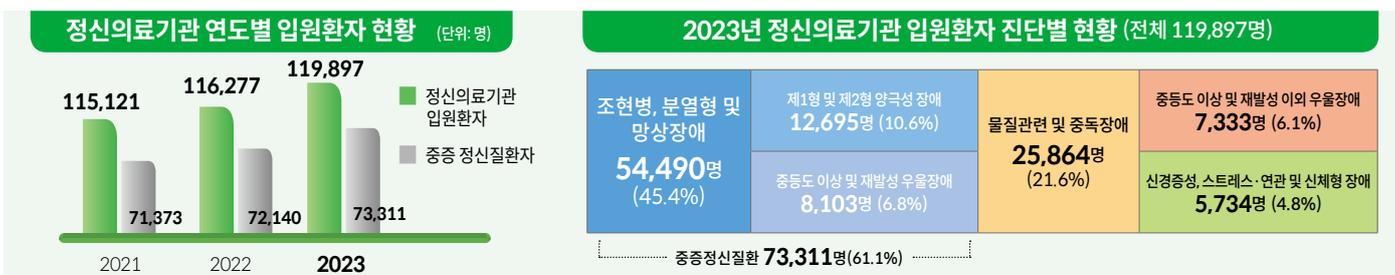
* 기관유형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서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2023)

** 합계는 정신과(4개소), 한의원 정신과(2개소), 요양병원 정신과(4개소)를 포함한 수치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현황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2021년 115,121명에서 2023년 119,897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3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61.1%는 중증정신질환자이다. 특히,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는 전체 입원환자의 45.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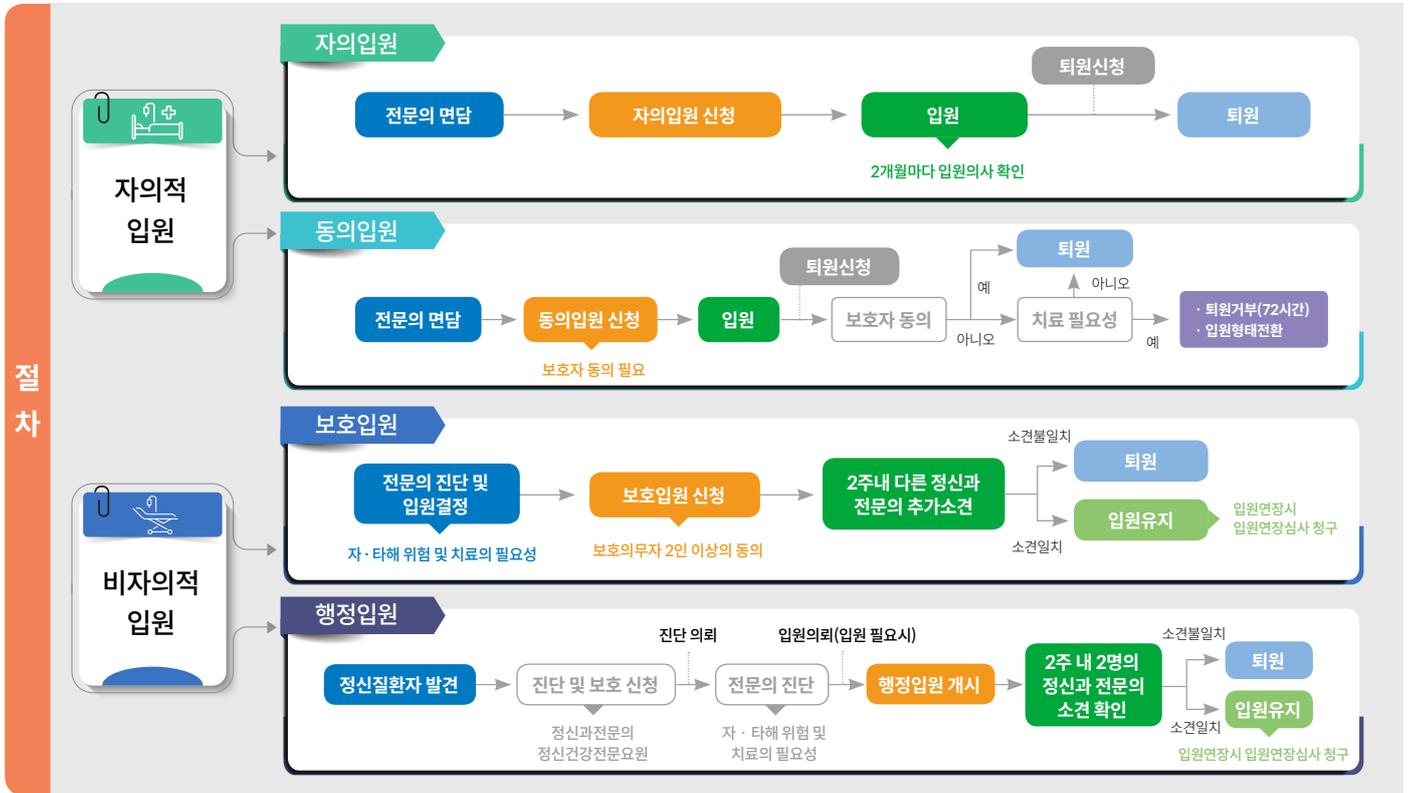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2023)

* 입원환자 현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의 진단코드 기준, 치매(F00-F03)를 제외한 15세 이상 F코드 입원환자임(단, 재입원이나 코드가 중복된 인원은 제외).

** 진단별 입원환자 수는 재입원, 중복진단 등의 이유로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결정하는 자의적 입원이고,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타인이 입원을 결정하는 비자의적 입원으로 분류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s://www.ncmh.go.kr) 재구성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 유형으로 3일 뒤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됨. 해당 입원은 환자의 입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비자의적 입원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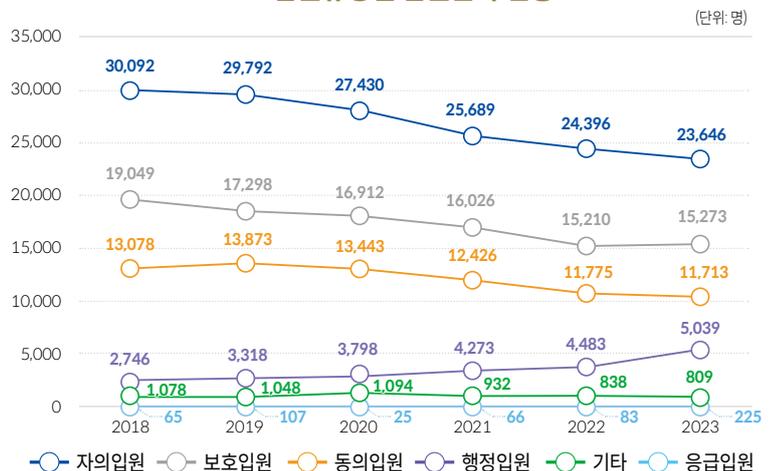
정신의료기관 입원유형별 현황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61.6%였던 비자의적 입원율은 2019년 32.1%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36.5%를 기록하였다. 유형별로는 자의입원 환자가 2018년 30,092명에서 2023년 23,646명으로 감소한 반면, 행정입원 환자는 2018년 2,746명에서 2023년 5,039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비자의적 입원율



입원유형별 입원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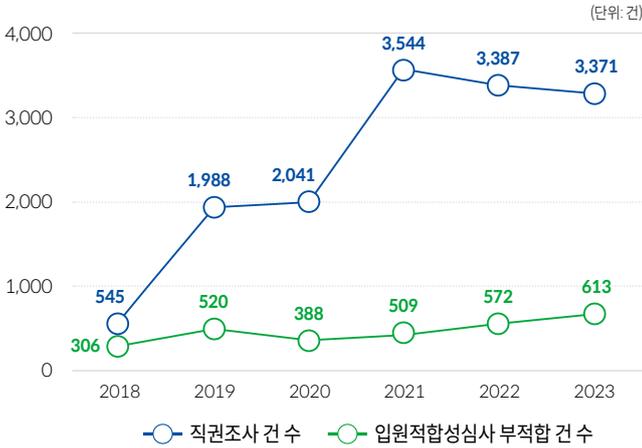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18-2023). 단, 2017년 이전 자료의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2019.12) 자료를 참고함.

*입원기간은 환자마다 다양하므로 입원환자 유형별 현황은 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시점자료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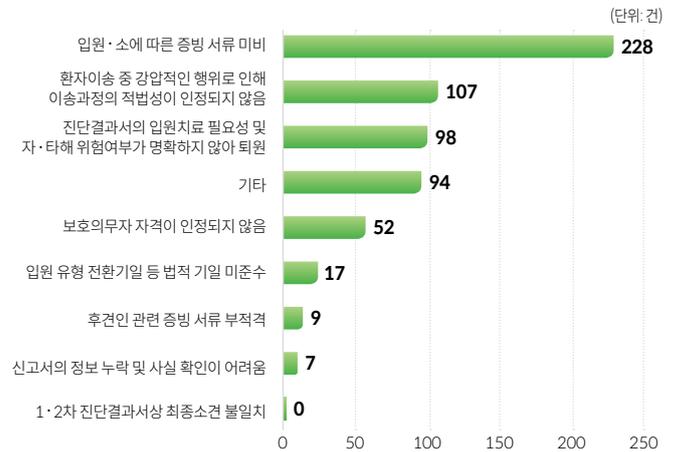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현황

2018년부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운영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비자의적 입원환자의 최초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을 심사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에 따른 부적합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의 부적합 이유를 보면 증빙서류 미비(228건) 다음으로 이송과정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107건)이 많았다.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입원적합성 심사 운영 현황



2023년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입원적합성심사 부적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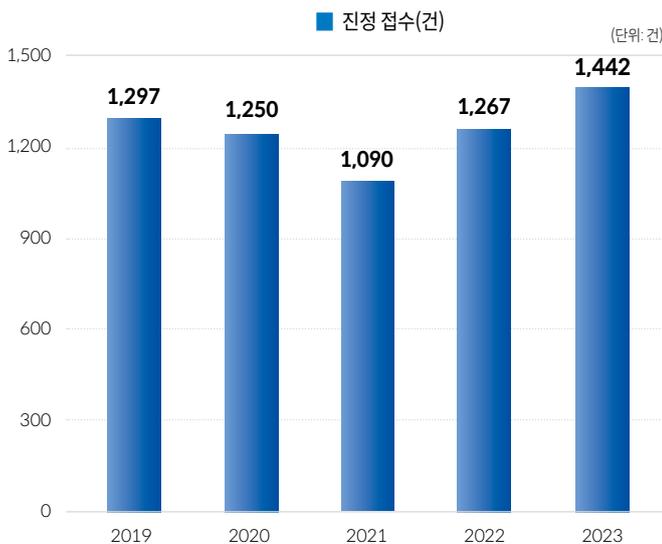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18-2023)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등의 소속 직원에게 입원적합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입원이나 퇴원 등을 결정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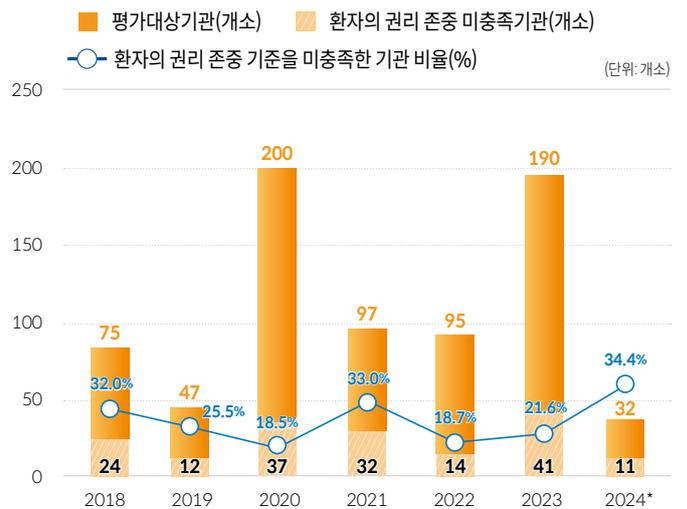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최근 5년을 보면, 2021년 까지는 진정 접수 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42건을 기록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2024.11)

정신의료기관 평가 현황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환자의 권리 존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합격한 사례는 매년 15%를 넘고 있다.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출자료(2024.11)

* 5주기('24~'26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진행 중

** 평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3년마다 그 결과를 공표함.

※ 국회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이에 대해 우수평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자의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가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05일 기준)

대표발의	주요내용
한지아의원[2201061] (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2202686] (2024.08.09.)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6조제5항·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김예지의원[2203242] (2024.08.27.)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전진숙의원[2203832] (2024.09.10.)	현행법령에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제3항·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제16호·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박충권의원[2203941] (2024.09.1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김예지의원[2205532] (2024.11.13.)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Data & Law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문의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 국내법률정보과(02-6788-4766)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 ISSN 2982-6241

